



출자전환(Debt-Equity Swap, DES)

김 춘 대리 (법제조사과)

1. 개요

가. 정의

- 기업에 금전의 대여등을 통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당해 채권을 회사의 지분(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 출자전환은 별도의 주금납입 없이 대차대조표상 부채계정의 항목을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의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음.
-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식대금납입에 대신하여 상계하는 것은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4조에 위반되므로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떤 채권도 출자전환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음.
- 그러나 1996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이 되었던 금융기관의 부실 과다여신과 기업의 과도한 금융부채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음.
-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 대하여만 이용되던 출자전환이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까지 확대 · 이용되게 되었음.

(표) 출자전환 전후의 대차대조표 비교

출자전환전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자산	500	차입금	300
		기타 채무	200
자본금		50	50
		이월결손금	△50
계	500	계	500

⇒ 출자전환후 대차대조표

자산	500	차입금	200
		기타 채무	200
자본금		150	150
		이월결손금	△50
계	500	계	500

* 차입금 2억원을 액면가로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음.

나. 대상회사

- 출자전환의 대상회사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으며,
- 주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소위 워크아웃(workout)기업들이 대상이 됨.

- 다만, 이들 기업들 중에서도 일정한 기준하에 대상기업이 선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i) 이자비용부담을 면제하거나 대폭적으로 감액하는 경우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즉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 ii)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부채와 금융비용부담이 과다한 기업으로, 이는 영업이익률이 순금융비용부담률보다 낮아 경상이익이 적자인 기업이나 영업이익률이 과거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기업, iii) 제3자의 인수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는 기술력이 있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기업 등임.

다.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 축소, 국민부담의 경감, 국부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실업 문제 축소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 및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부정적인 효과

- 기업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출자전환은 금융기관 보유 지분확대의 결과를 낳아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약화와 금융기관 간섭 증가로 경영권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음.

2. 출자전환의 방식

- 출자전환의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인 경우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

자의 형태로 이루어짐.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

- 신주발행시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주주등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 가치의 공정성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게 됨.
-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달리 비금융권의 채권은 주금납입과 상계처리될 수는 없으나 당해 회사의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음(대법원 등기예규, 2002. 8. 26. 등기 3402-463 질의회신).

※ 출자전환 대상채권

- 기한이 도래하여 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확정된 채권이면 모두 가능함.
- 즉,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이든, 영업상 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이든, 아니면 임금채권이든 제한이 없으며, 주채권은 물론 보증채권, 부보증채권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채권이면 출자전환이 가능함.
- 현실적으로 채권의 상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담보채권보다는 상환가능성이 낮은 무담보채권이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나.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제3자배정 증자하는 방식

-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방식은 일반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법과 동일함.
- 다만, 별도의 주금납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에 출자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주금납입증 대신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함.
- 이는 대법원이 1999년 1월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기등기신청



에 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960호)를 제정하였는데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규정된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① 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임.

다. 출자전환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타 방법

(가) 선출자후 채무변제

- 채권자가 채무자인 회사에 먼저 출자를 한 후 회사가 그 출자금으로 당해 채권자에게 바로 그만큼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
- 그러나 이 방법은 채권자가 일단 주식대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출자한 채권자에 회사가 변제하기 전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용되기 힘든 부분이 있음.

(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존 주주외에 "경영상 필요로 채권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들이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음.
- 상법상 사채대금을 납입하는 데 있어서는 주식대금의 납입과 달리 현금납입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계나 대물변제도 가능하기 때문임.
- 그러나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함) 제62조에 의하면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또는 신주인수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전환의 효과를 1년이내에 기대하기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거의 이용되고 않고 있는 실정임.

3. 출자전환 절차

- 다른 모든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이 가능하려면 출자전환에 대하여 대주주나 경영진의 반대가 없어야 하며,
- 채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한 감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감자를 위한 절차, 즉 감자승인 주총은 주총특별결의사항이므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함.
- 그리고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서상 출자전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정리절차 개시후에 실제 출자전환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함(회사정리법 제222조).

가. 일반 채권의 현물출자 절차(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1) 현물출자의 검사(상법 제422조)

-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416조 제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음.
-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음.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음.
-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

경된 것으로 보게 됨.

(2)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상법 제416조)

- 정관 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주총에서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증자하여야 함)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 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짐.

- 현물출자시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배정방식에 따라 시가에 일정한 할인율을 하로 할인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즉, 현물출자의 대상자가 특정된 개인이나 단체로 제한되는 제3자배정방식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증가, 1주일 평균증가 및 최근일 증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증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증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
- 다만, 액면미달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 할 수 있음.

③ 신주의 납입기일

- 주금의 납입없이 현물출자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신주발행절차에서와 같은 의미는 아니며,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날, 즉 채권의 양도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짐.

④ 신주의 인수방법

- 출자전환을 하려는 채권자들이 모두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배정의 방식을 취하면서 현물출자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기 어려워 대개 제3자배정방식을 취하게 됨.

⑤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채권의 내용,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의미함.

(3) 유상증자 공시

-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즉 이사회 결의시에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 제1항 1호 가목,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4)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 회사와 출자전환하는 채권자간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함. 다만, 계약체결은 이사회 결의후에 하더라도 채권양도·양수일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아울러 상장법인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과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만 신주의 발행이 가능함(증권거래법 제8조).
- 다만, 출자전환의 경우 사모방식에 해당하므로 1년동안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유가증권발행규정 제12조 제1항)
- 그리고 발행가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 유가증권신고서와 관련한 사항은 “유상증자” 부분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함(월보 ‘상장’, 2003년 3월호, 81쪽 이하 참조).

(6) 주식의 인수

-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정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함.

(7) 출자의 이행

- 현물출자자인 채권자는 출자의 목적인 채권을 납입기일 까지 회사에 인도하면 됨(상법 제425조, 제305조 제3항, 제295조 제2항).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주주가 되는 시기)

-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음(상법 제423조).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됨.
-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후단, 제350조 제3항 후단).

(9) 신주의 발행, 교부 및 상장

- 주권용지를 수령하여 가쇄(통일규격증권용지에 상법에서 정한 주권의 기재사항을 표시하는 것)를 한 후, 증권거래소에 견양주권을 첨부하여 신주 상장을 신청하면 됨.
- 가쇄소로부터 가쇄 완료된 예비주권을 인수하여 관리하면서 사전에 통보한 신주권교부일 이후 주주로부터 교부청구가 있으면 주권 뒷면에 주주명을 기재하여 교부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신주권 교부일 익일에 상장함.

(10) 등기

(가) 등기기간

- 채권 인도일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425조,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나) 신청인

-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함(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다) 등기사항(상법 제317조 제3항 및 제4항, 제183조)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② 자본의 총액 :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함.

(라) 첨부서면

- ①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1호)
- ②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3호)
- ③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4호)
- ④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 ⑤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비송사건절차법 제152조, 제153조, 제202조 제1항)

나.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절차(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서 주금납입방법에 있어 현실적인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다른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됨.

(1) 정관의 정비

- 출자전환을 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제3자배정방식을 취하게 됨. 그런데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함(상법 제418조 제2항). 예를 들어 “○○주의 범위내에서 출자전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정관에 존재하여야 함.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전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감자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에 정관변경 안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관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이율러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정관에서 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범위내이어야 하며,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부

족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관을 정비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려야 함.

(2)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상법 제416조)

-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고 또 이에 의거하여 이미 제3자와 신주인수권부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할 것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함.
- 대출금 출자전환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② 신주의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의 결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와 동일함.
 -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대상인 채권의 가치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회사에서 고용한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나,
 -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가치는 당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상력에 의하여 결정되게 됨. 일반적으로 채권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 ③ 신주의 납입기일
 - 대출금의 출자전환의 경우 실질적인 주금납입의무의 이행이 존재하지 않으나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합의한 특정일이 납입기일이 됨.
 - ④ 신주의 인수방법
 - 신주발행전에 각 금융기관과 합의하여 결정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제3자배정의 방식을 취하게 됨.

(3) 공시

-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즉 이사회 결의시에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 제1항 1호 가목,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4) 출자전환계약의 체결

- 회사와 출자전환하는 금융기관간에 출자전환계약을 체결함.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회결의 이전에 이사회 사

후승인을 조건부로하여 출자전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

- 계약서에는 주금납입에 대하여 대출채권으로 상계하자는 의사표시 내용이 포함되어야 등기가 가능함.

(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신주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등 제출은 앞에서 설명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함.

(6) 청약 및 배정

- 제3자배정의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금융기관은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 다만, 출자전환의 경우에 채권기관과 합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출자금액이나 시기 등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청약일이 존재하지 않게 됨.

(7) 납입 및 금융감독위원장의 확인

- 대출금의 출자전환의 경우 실제로 납입이 이루어지 않고, 등기시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됨.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주주가 되는 시기)

-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 무가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됨.

(9) 신주의 발행, 교부 및 상장

- 신주의 발행, 교부 및 상장과 관련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함.

(10) 등기

- 등기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채권의 현물출자의 경우와 동일함.



- 다만, 주금납입 없이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므로 첨부서류가 다소 다름.
- ①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1호)
- ② 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대법원등기예규)
- ③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대법원등기예규)
- ④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대법원등기예규)
- 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 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비송사건절차법 제152조, 제153, 제202조 제1항)

4. 기타 관련 사항

가. 선행절차로서의 감자

-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당해 기업의 자본(특히 대주주의 자본)을 감소한 후 대상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는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자산들이 인수한 주식가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임.
- 감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총 승인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감자비율의 산정

- 감자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회사 경영정책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적정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실무상으로는 대상기업의 주식 시가 및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여 감자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개 자본감소후 당해 기업의 1주당 가치가 액면가를 상회하도록 하는 선에서 감자비율을 정하고 있음.

나. 출자전환에 관한 이의제기

-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되며(상법 제429조),
-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한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상법 제424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01조, 제399조).

5. 출자전환 진행일정표

가. 채권의 출자전환(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진행일정표

No	진행 절차	일정	대상기관	관계법규(비고)
1	현물출자계약 체결(이사회 승인 조건부)	D		이사회 결의이후 계약체결 가능
2	유상증자 이사회결의	D+1		상법 416조
3	유상증자 공시	D+1	금감위 거래소	유기증권발행규정 제69조, 공시규정 제4조

No	진 행 절 차	일 정	대상기관	관계법규(비고)
4	이사회의사록 공증		공증법인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5	감정인 조사보고서 작성	D+2	감정인	상법 422조
6	법원인가서 제출	D+3	법원	상법 422조
7	법원인가(예상)	D+4~20(=R)	법원	1주일에서 1개월로 유동적, 실무 15일 예상함
8	유가증권신고서제출 분담금납부	R+1	금감원	거래법 8조, 제206조의8 유가증권발행규정 제3장 분담금징수등규정 참조
9	주식인수증 접수	R+8	채권자	
10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R+9		거래법 9조, 시행규칙 3조
11	사업설명서 작성 · 공람	R+9	금감위 거래소	거래법 12조, 시행규칙 4조
12	신주납입기일	R+9		
13	신주의 효력발생일	R+10		납입기일의 익일
14	등기	R+10	등기소	상법 317조,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이내(본점)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제205조
15	신주발행 의뢰	R+11	대행사	
16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R+11	금감위	거래법 17조, 유가증권발행규정 29조
17	가채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R+16	가채사 대행사	거래법 176조의2
18	주권가채 및 납품	R+21	대행사	상법 제356조
19	상장 신청(주권발행후) 상장수수료납부	R+21	거래소	상장규정 9조 견양권 첨부
20	신주권 교부	R+26	채권자	
21	신주권 상장	R+27	거래소	신주권 교부일 익일



나. 대출금 출자전환(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진행절차표

No	진 행 절 차	일 정	대상기관	관계법규(비고)
1	※ 정관 정비			
2	출자전환 계약 체결 (이사회 승인 조건부)	D		이사회 결의이후 계약체결 가능
3	유상증자 이사회결의	D+1		상법 416조
4	유상증자 공시	D+1	금감위 거래소	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 공시규정 제4조
5	이사회의사록 공증		공증법인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6	유가증권신고서제출 분담금납부	D+2	금감원	거래법 8조 제206조의8 유가증권발행규정 제3장 분담금징수등규정 참조
7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D+10		거래법 9조, 시행규칙 3조
8	사업설명서 작성 · 공람	D+10	금감위 거래소	거래법 12조, 시행규칙 4조
9	출자전환 확인서 발급	D+10까지	금감원 (신용감독국)	대법원등기예규
10	신주납입기일	D+10		
11	신주의 효력발생일	D+11		납입기일의 익일
12	등기	D+11	등기소	상법 317조,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이내(본점)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제205조
13	신주발행 의뢰	D+12	대행사	
14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12	금감위	거래법 17조, 유가증권발행규정 29조
15	가纱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D+17	가纱사 대행사	거래법 176조의2
16	주권가纱 및 납품	D+22	대행사	상법 제356조
17	상장 신청(주권발행후) 상장수수료납부	D+22	거래소	상장규정 9조 견양권 첨부
18	신주권 교부	D+27	채권자	
19	신주권 상장	D+28	거래소	신주권 교부일 익일